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94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 의 자 : 서영석 · 이해식 · 강준현
진성준 · 윤준병 · 한정애
박민규 · 허종식 · 박홍배
노종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 등은 개인별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감액의 이유가 불충분한 측면이 있고,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혼인 기피, 위장 이혼 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감액 비율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항 등).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준연금액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5조, 제5조의2”를 “제5조”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하위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 비율에서 제2항에 따른 감액 비율을 뺀 값에 해당 기

초연금액(제2항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제2항에 따른 감액분이 반영
된 금액을 말한다)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액의 감액에 관한 특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 ----- ----- -----제2항-----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 ----- ----- ----- ----- ----- -----.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기준연금액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	<삭 제>

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생략)
<신 설>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하위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

-----.

④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 비율에서 제2항에 따른 감액 비율을 뺀 값에 해당 기초연금액(제2항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제2항에 따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액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 -----.
---	--